

의안번호	2210088
의 퇴 인	노종면의원
회 답 일	2025.5.9.
추계번호	25B252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 또는 <u>공영주차장</u> 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3항)	재량규정
		개방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16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9조제13항 및 제16항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안 제19조제16항¹⁾ 및 현행법 제21조의2 제7항²⁾에 따라 보조금 지원, 설치비용 보조 또는 용자 지원이 이뤄질

1)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⑥ 개방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주차장 지정 여부, 규모, 운영방식, 보조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 및 지급단가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설주차장 주민개방을 위하여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자료 1]에서 확인)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의 조례로 정한다.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주요 지방자치단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 서울시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 (필요성)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시민(이용자)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 도모
- (의의)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 (효과)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가능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대상
 - 일반 건축물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학교장
 - 단,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하는데 제한되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가능
-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시민(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자치구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2025년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보조금 기준]

구분		지원기준
주차장시설개선 (차단기, CCTV, 도색, 안내팻말, 시설보안 운영관 리, 시건장치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파트,기업체,종 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1회) 최대 10백만원 · (2회이상) 최대 5백만원
	학교 주차장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1회) 최대 10백만원 · (2회이상) 최대 5백만원

구분		지원기준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2년 이상 약정) ·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주차운영수익보전 (대상: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운영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최초 2년간) · 1면당 최대 2백만원

자료: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 대전광역시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 대 상: 학교, 교회, 상가, 일반건축물, 공공시설 등 부설주차장
- 내 용: 건물소유주(학교 등)와 구간 개방협약으로 주차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구에서 주차장 시설공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2025년 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보조금 기준]

분 야	구분		지원금액(시비50%, 구비50%)	비고
최초	주차장시설개선 (안내표지판, 주차관제시 설, CCTV, 주차정보안 내시스템,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펜스 등 설치 및 정비)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 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1회만 지급
		학 교	공사비 최고 25백만원(10 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연 (무료개방, 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자치구 영조 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대체 가능		
연장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주차장 운영보전금 *(매년 1회 정산 지급)	5면 이상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 장 개방시)	공 공 기 관 제외
		20면 이상	최고 10백만원(2년 이상 연 장 개방시)※ 개방 주차면당 월2만원 × 24(2년)	

자료: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참고자료 2] 전국 주차장 설치현황

구분	(개소)	주차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면)		소계	유료	무료	소계	공영	민영	
합계	(개소)	1,909,763	21,919	11,724	9,965	26,469	15,744	10,725	1,861,375
	(면)	28,967,582	543,701	219,364	324,337	1,322,870	888,245	434,625	27,101,011
서울	(개소)	305,903	8,033	8,033	—	1,916	1,160	756	295,954
	(면)	4,548,788	103,737	103,737	—	99,805	74,636	25,169	4,345,246
부산	(개소)	72,405	1,209	932	277	3,609	670	2,939	67,587
	(면)	1,735,007	28,106	23,849	4,257	86,047	23,002	63,045	1,620,854
대구	(개소)	90,122	1,253	88	1165	1,059	584	475	87,810
	(면)	1,225,565	38,000	5,435	32,565	48,581	33,694	14,887	1,138,984
인천	(개소)	80,316	1,706	251	1,455	826	647	179	77,784
	(면)	1,551,173	54,255	6,815	47,440	41,898	34,068	7,830	1,455,020
광주	(개소)	29,391	185	7	178	720	325	395	28,486
	(면)	723,686	4,316	489	3,827	33,082	15,595	17,487	686,288
대전	(개소)	51,978	364	41	323	591	346	245	51,023
	(면)	961,553	16,962	3,834	13,128	29,591	14,126	15,465	915,000
울산	(개소)	52,861	128	65	63	1,150	292	858	51,583
	(면)	731,849	20,715	15,963	4,752	48,439	20,091	28,348	662,695
세종	(개소)	10,663	8	2	6	82	66	16	10,573
	(면)	156,724	214	46	168	5,692	4,232	1,460	150,818
경기	(개소)	531,122	3,465	1,899	1,566	3,376	1,952	1,424	524,281
	(면)	7,819,608	103,451	44,635	58,816	245,713	139,787	105,926	7,470,444
강원	(개소)	92,555	803	77	726	1,429	1,117	312	90,323
	(면)	1,003,270	27,261	2,491	24,770	81,956	69,930	12,026	894,053
충북	(개소)	78,156	646	41	375	785	544	241	76,725
	(면)	974,787	14,610	1,377	13,233	45,765	30,880	14,885	914,412
충남	(개소)	82,072	228	20	208	1,399	1,107	292	80,445
	(면)	1,554,441	8,313	728	7,585	120,112	100,783	19,329	1,426,016
전북	(개소)	50,432	438	3	435	1,309	924	385	48,685
	(면)	920,539	16,175	145	16,030	66,530	47,647	18,883	837,834
전남	(개소)	73,416	382	27	355	2,125	1,736	389	70,909
	(면)	896,037	19,085	1,011	18,074	121,818	95,219	26,599	755,134
경북	(개소)	117,909	928	79	849	1,976	1,260	716	115,005
	(면)	1,496,565	27,924	3,090	24,834	82,461	64,306	18,155	1,386,180
경남	(개소)	136,195	1,358	153	1,205	2,819	1,838	981	132,018
	(면)	2,197,091	51,415	5,342	46,073	125,410	84,496	40,914	2,020,266
제주	(개소)	54,267	785	6	779	1,298	1,176	122	52,184
	(면)	470,899	9,162	377	8,785	39,970	35,753	4,217	421,76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2023년 12월 기준)